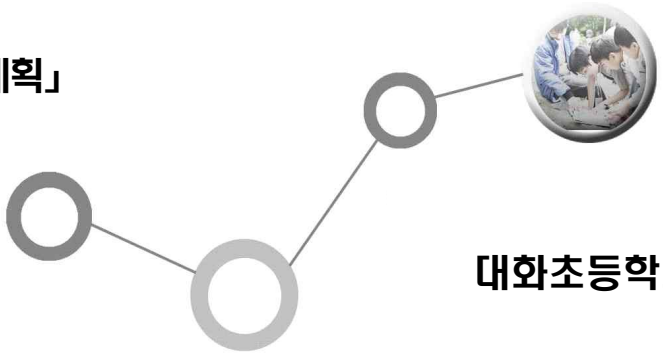
교육다운 교육, 학교다운 학교

2022학년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2022. 3.

대화초등학교

「2022학년도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대화초등학교

CONTENTS

Ⅰ.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개요 ····· 1

1. 학교현황 ····· 1

2. 학교 안전 조직 ····· 2

Ⅱ. 학교안전 세부 추진 계획

1. 추진 실적 분석 ····· 6

2. 비전, 목표 및 중점 과제 ····· 7

3. 안전한 교육활동 연간 운영 계획 ····· 7

4. 중점과제 1.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 8

5. 중점과제 2.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 11

6. 중점과제 3. 안전한 학교풍토 및 시설 조성 ····· 13

[부 록]

1. 학교 위치, 소방차 진입 경로, 비상대피 안내도 및 교외 대피시설 ····· 16

2.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 19

3. 학교시설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월 학교안전점검의 날, 양식] ····· 21

4.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 26

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 27

참고 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 33

참고 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 35

Ⅰ.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 개요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6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한다.

1. 학교현황 (2022.3.2.)

가.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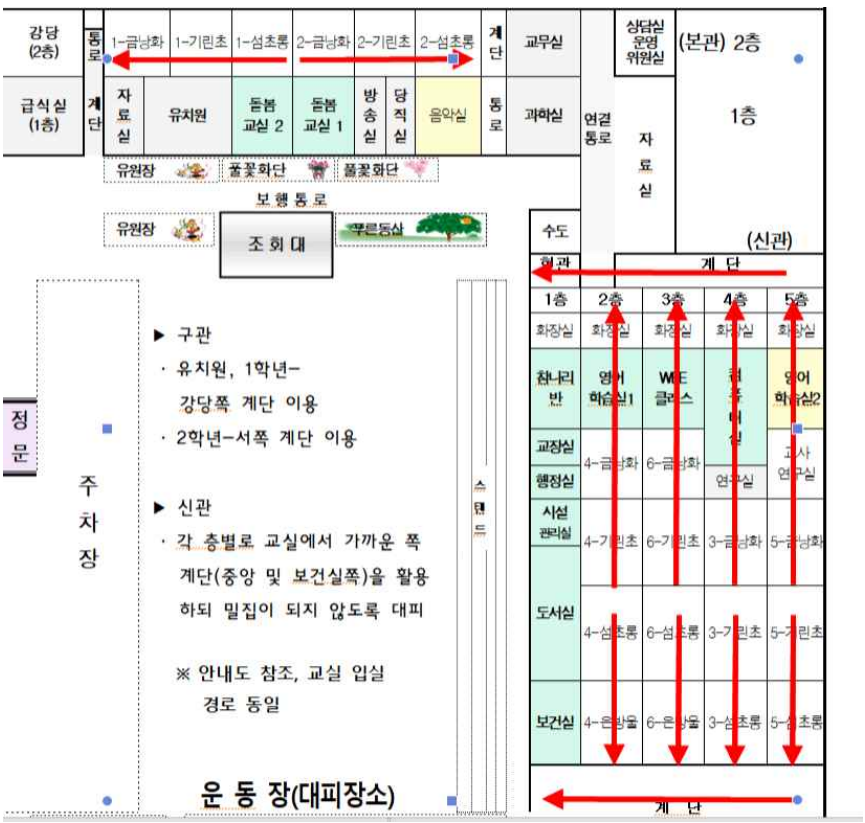
학교명	대화초등학교			설립 구분	공립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송포로 50				
전 화	031-911-0002	FAX	031-911-2017	홈페이지	http://www.daehwa.es.kr
교 장	O O O		학교안전책임관(교감)	O O O	

나. 학생 및 교직원 현황

학생 (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합계(20학급)
	72	75	72	99	87	102	507

교직원 (명) *병설유치원 포함	교원	직원	계약제 직원 (실무사, 강사, 당직원, 환경미화 사서)	급식 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지킴이)	기타 (사회복무요원, 방역원)	합계
	30	3	11	5	3	4	56

다. 비상대피안내도



2. 학교 안전 조직

가. 학교 안전 관련 추진 조직도



현장대응반

▶ 반장: 박**
1학년부,5학년부,
보건교사,안전담당교사
-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 보호자 연락
-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 (현장방문)
- 일지, 사안보고서 작성

교내지원반

▶ 반장: 정**
2학년부,3학년부
- **비상연락(전직원/학부모)**
- **학생현황 파악**
- 상황판 작성 및 **언론대응(배포문서 작성)**
- 학사일정 검토
  - 수업결손 대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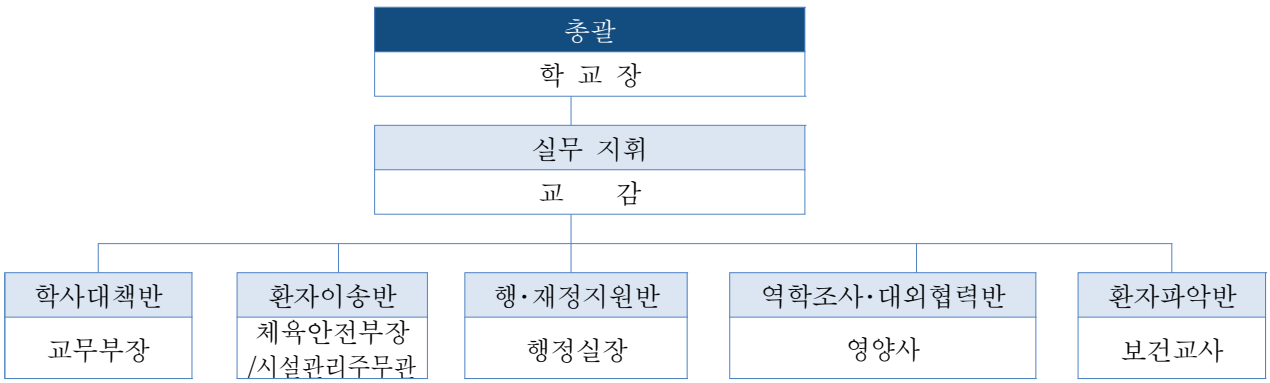
외부지원반

▶ 반장: 손**
4학년부
- 현장 지휘, 자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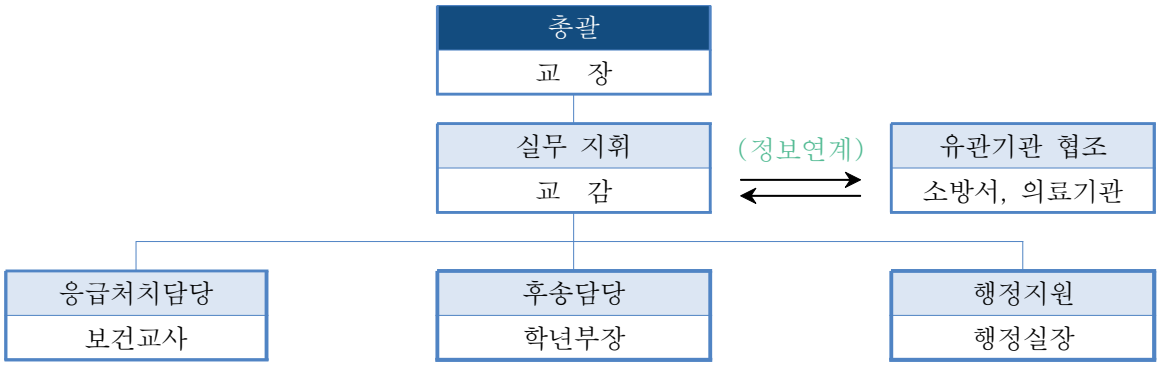
행정지원반

▶ 반장: 박**
6학년부
- **피해현황 파악**
- **시설관리 및 예산지원**
- 학생 귀교 대책 수립
- 보호자 현장방문 지원

나. 학교식중독 교내 대책반의 구성 및 운영



다. 응급구조체계 조직



라. 유관기관 협조체계

1)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기관명	사무실(주간)		당직실(야간)	
	전화	FAX	전화	FAX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031-907-8094	주간과 동일	주간과 동일
경기도교육청	031-249-0683 031-249-0684	031-253-0035	(남부) 031-249-0342 (북부) 031-820-0514	031-249-0362 031-821-1023

2) 경기도 관할 소방서

기관명	주소	전화
대화119안전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서 중앙로 1630	031-930-0571

3) 관할 경찰서

기관명	주소	전화
고양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일산서부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	
가좌파출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24	031-918-6112 (112)

4) 권역응급의료센터

기관명	주소	전화
의료법인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14번길 55 (화정동)	031-810-5114

5) 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명	주소	전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대화동)	031-910-7114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식사동, 동국대학교일산병원)	1577-7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백석동,백석1동 1241외1필지 4층)	1577-0013

6) 인근 병•의원

기관명	주소	전화
연세 큐치과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로 26	031-919-2879
린사랑의원(내과/소아과)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 76	031-924-2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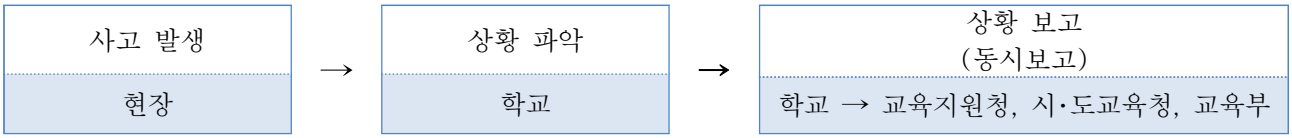
마. 학교 안전사고대응


대 응
상 황
학교 상황 대응
사 전 위 기 관 리
체제정비
학교사고 대책반 업무분장
교육 및 훈련
사고인식 및 대응능력강화
교원 대응능력 강화
점검
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정비
상황시스템 가입 및 점검
유관기관 지역사회 안전네트워크 구성
상황별 행동대처 방법 세분화
상황별 대처요령 및 업무매뉴얼 숙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체험활동 시간 활용 안전교육 실시
안전업무 담당자 전문성 신장 연수
발생 시 위 기 관 리 1단계
사고발생
상황보고
(정보연계)
경기도교육청 상황실
(정보연계)
교육지원청 상황실
일일구이구조삼보고
1. 119 (5W1H)
2. 구조 및 구호
3. 보고
※ 화재 등은 소리를 질러 먼저 알려야 함
※ 현장 보존
학교장
1. 사고대책반 소집
(사안논의 및 사고처리(안)결정 → 해결 방안 지시)
2. 사고 통지, 협조 요청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회장 등)
교 감
1. 사고대책반 운영
- 반 구성 및 역할 배정
- 정확한 정보 종합 및 분석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교육청 보고 (상황전파시스템)
2. 보호자에 대한 대응 및 요구사항 논의
발생 시 위 기 관 리 2단계
현장대응반
- 구호조치 및 병원후송
- 보호자 연락
- 최초 사안 조사 및 정보수집(현장방문)
- 일지 작성
- 사안보고서 작성
교내지원반
-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 직원회의 개최
- 학생현황 파악
- 학사일정 검토
- 관련 문서 작성
행정지원반
- 학생 귀교 대책 수립
- 보호자 현장 방문 지원
- 피해현황 파악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협조체계 구축
- 시간대별 조치사항 기록
- 사안 관련 학부모 응대
- 학생 관리 (동요 및 추가 사고 방지)
- 학부모 지원 요청
- 긴급 상황 시 SNS발송
- 가정통신문 발송
- 피해학생 및 가족 지원
- 상담 계획 수립
-추가 사고 위험 여부 확인
-행 ·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복 구
학교 정상화 (사고종결 및 후속대책 수립)
사고관련 안전교육 (예방 및 훈련)

4) 안전사고 보고체계 (학교 →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

(가) 현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병원 등에 즉시 구조를 요청 후

(나) 동시 보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을 위해 사고현장에서 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동시 보고



(다) 동시 보고방법: 현장사고 상황파악 후 교육부 안전 대표메일*을 통하여 사고 보고(긴급한 사안일 경우 즉시 보고)

* moe119@korea.kr 이메일로 사고 보고 시 담당자 개인메일로 전송

(라) 동시 보고기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교육활동 중 발생) 병원치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발생)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의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에서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및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Ⅱ. 학교안전 세부 추진계획

1. 추진 실적 분석

가. 2021학년도 학교안전교육계획 추진 실적

1) 교직원 안전교육 직무연수 이수 현황 (병설유치원 포함)

구분 / 연도	교직원 수(명)				안전관련 전문교육(15시간) 이수				
	교원	직원	계약직 교직원 (기간제 포함)	계 (A)	교원	직원	계약제 교직원 (기간제 포함)	계 (B)	이수율 (B /A)×100
2021	*28*	*3*	*11*	*42*	*7*	*1*	*5*	*13*	*31%*

2) 재난대비훈련 실적

구분 / 연도	화 재	
	자체(지진대비훈련 병행)	합동
2021	*1*	*1*

3) 안전영역별·교육과정영역별 학생안전교육 이수시간 현황[1)]

구분 / 학년	안전교육 영역 실적(시간; 단위활동, 차시)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계
	(기준 10)	(기준 9)	(기준 3)	(기준 5)	(기준 5)	(기준 0)	(기준 1)	
유치원 (*별도 기준을 따름)	13	10	8	10	6	2	2	51
1학년	27	20	31	7	12	3	4	104
2학년	14	12	21	11	11	3	2	74
3학년	33	10	23	7	11	2	4	90
4학년	15	10	27	12	6	2	2	74
5학년	15	10	27	12	6	2	2	74
6학년	15	14	27	12	8	8	4	88

4)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총 9건)

(가) 활동시간별

활동시간별							합계
체육수업	점심시간	수업시간	휴식/청소	학교행사	특별활동	등하교	
7	2	•	•	•	•	•	9

(나) 활동장소별

장소별					합계
운동장	부속시설(강당)	교 실	통 로	교외활동	
1	6	•	2	•	9

(다) 행동별

행동별											합계
공부	실험/실습	구기운동	무도운동	육상	기타운동	식사/수면/휴식	보행/주행	장난/놀이	탑승/자전거	기타	
•	•	7	•	•	•	•	•	2	•	•	9

나. 실태조사 분석 결과 및 반영

1) 영역별 내실있는 안전교육 실시

2)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 예방 역량 집중

---

1) 2021학년도 안전교육영역별 기준시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25421(2020.5.28.)호에 의해 기존 51차시(영역별 합계)에서 33차시로 축소됨.

2. 비전, 목표 및 중점 과제

비전 (이루고자 하는 모습)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 :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실현
목 표	• **실효성 있는 안전계획의 수립으로 학교 구성원의 사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 **자신의 안전과 타인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역량 배양** • **학교 안전 관리의 체계성(계획, 준비, 실행, 평가, 피드백) 확보**

중점 과제	세부 추진과제
[1]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1. 학생중심 현장중심 안전교육 안착 2.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 3.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4.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5. 장애학생 안전
[2]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1.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2. 교육활동 안전성 강화 및 지원여건 구축 3.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4. 교직원 대상 안전관련 연수
[3] 안전한 학교풍토 및 시설 조성	1. 학교 안전문화의 확산 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3. 학교시설 안전환경 개선

3. 안전한 교육활동 연간 운영 계획

구분	학사일정		안전교육	비상훈련	시설관리
	교내	교외			
3월	시업식, 입학식 학교안전계획 작성 및 연수		학교 교내생활 안전교육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민방위훈련 (학기당 1회)	매월 안전점검의 날
4월	과학 행사주간		행사활동 안전교육 수상 안전 예방지도	황사·미세먼지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5월	소체육대회주간 (어린이날 기념)	현장체험학습주간 수영교육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지도 재난 안전교육	화재예방 훈련 (합동/자체 소방 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6월	통일 안보 행사주간		행사 활동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전달연수
7월	여름방학		폭염 관련 예방 지도		매월 안전점검의 날
8월	개학식		방학중 여름 안전		매월 안전점검의 날
9월	학부모 상담주간		안전사고 예방 중점지도	체험학습활동 안전	매월 안전점검의 날
10월		현장체험학습주간	행사활동 안전교육	민방위훈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실시
11월	아동학대예방주간		화재 예방 지도 강화		매월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12월	졸업식, 종업식		겨울철 관련 안전교육 졸업 전후 안전교육		매월 안전점검의 날
2023.1월					매월 안전점검의 날
2023.2월					매월 안전점검의 날

※ 학사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중점 과제 1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 내실화

과 제	세부 내용	비 고
1 학생•현장중심 안전교육 안착,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	- 안전관리 연간계획 수립: 교육시간 확보 (7대 안전교육 표준안) - 나침반 5분 안전교육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사고대응력 강화 -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학년별 교육계획 반영 (교과•창체 51차시 이상)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활용 (가정연계 교육 실시)
2 재난대응 훈련 내실화	- 재난대응훈련 연간계획 수립 • 화재예방 훈련(5월), 재난대응안전훈련 (10월) 실시(학생•교직원 비상탈출, 대피훈련 등) - 해양 및 수상 안전교육 강화	유관기관(119안전센터) 협조 연1회 3학년 대상 수영교육실시
3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 인성교육 실천주간 운영 - 학교폭력 예방교실 운영 (전담경찰관, 폭력예방교육 등) -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실시 - 친구사랑의 날 운영	학기당 1회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 4회 실시
4 소수 학생 안전 관리	- 요양호자 - 장애 학생 안전 관리	보건교사 연계 통합학급 연계

가. 학생•현장중심 안전교육 안착 및 체험중심 안전사고 예방능력 강화

1) 교육과정 내 안전교육

가) 교과 연계 안전교육

○ 교과 연계 안전교육: 7대 안전교육 위주로 학년별 51차시 이상 편성

*2022학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한하여 51차시 이상 편성 → 33차시 이상 편성

나)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안전교육

○ 교과 연계를 중심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

[2022학년도 학년별 안전교육 편성 시수]

영역	중분류 및 교육내용		기준 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안전교육 7대 영역 (33차시)	*생활안전	1. 안전하게 교실, 가정, 공공시설 이용하기 2. 학용품·놀이용품의 안전한 사용 및 식품 안전 알기 3. 실험·실습 시 안전에 유의하기 4. 안전한 놀이활동 및 야외 활동 5. 유괴예방, 미아사고 예방과 대처	10	27	15	16	17	27	21
	교통안전	1.안전한 통학로 알기 2.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3.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 법규 알기	9	35	11	11	10	11	10
	*폭력 및 신변안전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법 알기 2. 학교폭력의 종류를 알고, 종류별 예방법 알기 3.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알기 4. 내 몸의 소중함을 알기 5. 아동학대의 유형 및 대처방안 알기 6. 가족폭력의 개념과 대처방안 알기 7.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3	42	27	37	27	24	3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올바른 약물 복용법 알기 2. 중독성물질을 알고 안전한 활용 방법 3. 건전한 사이버 통제 능력 배양 및 사용습관 형성하기	5	19	14	14	12	17	18
	재난안전	1. 화재의 원인 및 대피요령, 신고, 전파요령 알기 2. 화상 대처 요령 알기 3. 각종 자연 재난과 안전한 행동 알기 4. 폭발 및 붕괴, 테러 위협 유형별 대처 요령 알기 5.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5	12	6	6	6	7	6

	작업안전	1. 일터에서 발생하는 산업 재해를 알기 2.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0	3	2	2	5	5	2
	응급처치	1. 응급처치의 상황, 의미, 중요성, 신고·조치 방법 알기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 알기 3. 상처의 종류와 응급처치 하기 4. 일생생활 속 응급처치 알기	1	9	2	2	2	5	4
	소계		33	147	77	88	79	96	95

[교육자료활용] 학교안전정보센터(www.schoolsafe.kr) → 자료실 → 안전교육자료

◩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교육부고시 제2019-214) ◪

- 최소 편성 시수: 기존 51차시 → 33차시

구분		생활안전 교육	교통안전 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운동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 교육	직업안전 교육	응급처치 교육
교육 시간	유치원	영역별 교육 내용을 통합으로 실시하되, 총 이수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 이수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각 영역별로 최소 1 단위활동 이상 운영) *별도 계획 수립						
	초등학교	10	9	3	5	5	0	1
횟수		학기당 실시 횟수는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 가능						

2) 교육과정 외 안전교육: 나•침•반 5분 안전교육 활용

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나침반 안전교육 실시

나) 학생 대상 교육은 매일 5분 상시 교육 실시[2] (주간학습안내 반영)

(1) 담임교사 : 조・종례, 관련 교과시간, 창체시간 등을 이용한 교육

(2) 전담교사, 전담사 등 : 관련교과시간 또는 창체시간 등을 이용한 교육

요 일	주 제	교육 내용
월	생활안전	-동영상 보기, 위험 요소 찾기 등
화	교통안전	-교통안전 동영상 보기, 토의하기 등
수	재난안전	-화재 동영상 보기 -화재시 대피 방법, 초기 행동 방법 알기 -학교 대피로 알기, 대피 방법 익히기 등
목	보건안전	-응급처치 동영상 보기 -응급 상황시 행동 방법 알기 등
금	신변안전, 중독예방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보기 - 담배,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알기 등

다) 교직원 대상 교육은 요일별 교육 계획에 의거 실시

라) 교육방법 : 교육지원청 제공 자료를 재구성 하여 활용

(1) 단계

단계	교육 내용
도입	나침반 안전송을 함께 부르며 교육 준비
전개	교육청 제공 나침반 안전교육자료 활용
정리	안전사고별 안전구호 함께 외치기, 대처법 토론해보기 등

2) 자료는 업무관리시스템-업무지원-알림판-나침반교육,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학교안전 탑재 자료를 활용한다.

(2) 기타 연계 활동

▶ 나침반 5분 안전교육 쓰기
▶ 월별 또는 학기별 5분 안전교육 퀴즈 대회 실시(학급별)
▶ 5분 안전교육 내용 주제 4컷 만화 그리기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법 경연대회(학급별, 안전왕 선발)
▶ 학교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찾기 등
▶ 5분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가정교육 연계지도

「교육과정 내(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 학교급별 교육과정 수업시간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약 1/3이상을 교육한 경우, 1차시로 인정 (초등: 10분 이상)
「교육과정 외」안전교육 차시 계산 방법
➜ 수업 전·후(조·종례), 방과후등에서 1회 5분 이상, 총 5회 이상 실시하였을 경우, 1차시로 인정

3) 실험·실습 안전사고 예방: [부록 4] 참고
○ 실험·실습실 안전대책은 과학실 안전 매뉴얼과 지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실 관련 기준 등에 따라 마련하여 실시
: 담당자 교사 박**, 행정실무사 심** 및 과학전담교사 김**

4)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교육: [부록 4] 참고
○ 체육활동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를 기반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 및 적용**
: 담당자 교사 손** 및 체육전담교사 김**

나. 재난대응훈련 내실화

1) 재난대비 훈련 연간계획

일정	훈련명	훈련유형	대상	담당자	비고
3월	연간 훈련계획 설명회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	손**	
4월	체험학습활동 대응 훈련 황사·미세먼지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손**	
5월	화재 예방 (**합동/자체** 소방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손**	문화 119 안전 센터 합동
9월	체험학습활동 버스사고 대응 훈련	토론기반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손**/학년부장	
10월	자체 재난대비 훈련	현장훈련	모든 교직원과 학생	손**	지진 대비
11월	실험·실습 안전 훈련	토론기반훈련	학교장 및 담당 교직원	손**	

※ 재난대비 훈련 시 학부모 참가 또는 참관 가능: 학교의 안전훈련에 대한 홍보 강화

2) 재난대비 비상배낭 비치 및 활용 안내, 상시점검 [교무실 1개, 행정실 1개 비치]

가)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교실배치도, 학생과 교직원 명단, 화재경보기 작동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등이 담긴 비상배낭을 행정실, 교무실에 비치하여 보관·관리한다.

나) 학년별 현장 학습, 수영 교육, 진로교육등에 비상 배낭 구비 활용

< 비상 배낭의 구성 >

- 학교와 주변 위성사진 및 지도, 건물 도면(배치도, 평면도 및 각종 설비도면 등), 학생과 교직원 명단, 비상 열쇠, 화재경보기 작동법, 스프링클러 작동법, 설비(전기/가스/수도) 밸브 잠금 방법, 안전사고 지휘체계 및 연락처, 사고 지휘본부/재난대응 및 지원기관 명단과 연락처, 학생 대피장소, 재난대응기술 보유 교직원명단, 구급약품 배치 현황
- 비상용 손전등, 지압붕대, 기타 비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와 장비 등

3) 해양 및 수상 안전교육 강화: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정 운영(생존 수영)

○ 생존 수영은 담당자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 : 담당자 교사 김**

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1)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2) 학생주도,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활성화

3) 교육과정과 연계한 어울림프로그램 확대 적용

4) 언어문화 개선, 사이버폭력, 성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교육 실시

5) 교우관계 회복기관 운영을 통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노력

라. 소수학생(안전약자, 요양호자) 안전관리

○ 안전약자(요양호자)에 대한 안전지도는 “안전약자(요보호학생) 안전대책”을 참고하여 실시

: 보건교사 협조(연초 요양호자 파악 및 각 학급 담임, 전담교사에게 전달

5. 중점과제 2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과 제	세부 내용	비 고
1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체크리스트 활용 안전점검 실시 (비상열쇠, 구호품, 공사현장, 등)	학교 안전사고 대책반 월중계획 및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유지
2 교육활동 안전성 강화 및 지원여건 구축	- 학생을 배려하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급식,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등 • 돌봄 및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 현장체험학습 활동 안전 대책 수립	
3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 학교 출입관리: 외부인•방문객 출입 통제 (교내 차량통행, 주차관리 등) - 안심알리미 지원 및 활용 - 학원버스 안전지도 및 관리 (버스기사 안전 운행 협조) - 교사•학부모•지역사회 녹색어머니회 - CCTV 정기 점검 - 학교 안전생활 캠페인 실시	배움터지킴이 활용 관련사업 연계 행정실 연계 (교통법규, 승•하차 등) 등•하교시간 정상작동 및 녹화 기능 유인보안팀 연계
4 교직원 대상 안전 연수	- 교직원 안전관련 연수 이수 (학교안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15시간 이상 연수 참여 (3년간)

가. 교육시설 안전성 강화

1)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후 안전책임관 결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6

◩ 구성원별 역할 ◪

구성원	역 할 (임무)
교육행정실장, 시설·소방담당	▸ 전체 시설 세부 점검, 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담임교사	▸ 조·종례 및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교육행정실장	▸ 점검결과 기록 유지 확인, 점검결과 확인 및 학교장 보고
시설·소방담당	▸ 점검결과 기록 및 교육행정실장 보고
담임외 교사	▸ 교과교실 및 특별실 안전점검(과학실, 급식실, 체육관 등)
학생, 학부모	▸ 교실 및 복도 안전점검

가) 학교 시설 안전 점검

(1) 해빙기, 여름철, 겨울철 안전 점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점검 실시

(2) 재난위험시설 안전 점검

○ 재난위험시설 관련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추진: 행정실 협조

(3) 공사 현장 안전 점검 : 학교 내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공사 소요 발생 시)

(4) 학교 경비 및 시설유지・보수 업체

내용	업체명	연락처
무인 경비 업체	㈜에스원	1588-3112
소방 안전 관리 용역	㈜태경소방	***-3918-0090
전기 안전 관리 용역	㈜웅광전기안전기술	031-919-1340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에스엠엘리베이터	032-549-3100

나. 교육활동 안전성 강화 및 지원여건 구축

1) 학교급식 안전관리: 경기도교육청 지침·매뉴얼에 따라 실시 [부록 4 참조]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상시 점검을 통한 취약요소(파손, 흔들림 등)발견 및 보수 [부록 4 참조]

3) 돌봄 및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가) 돌봄 및 방과후학교 안전대책은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돌봄 운영지침 등에 따라 실시

나) 취약기간(동하계 방학 기간)에는 인근 치안센터에 순찰 협조: 필요시 협조 공문 발송

4) 현장체험학습 활동 안전 대책 수립

가) 외부체험활동 안전대책은 경기도교육청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침”에 따라 실시: 안전담당 교사가 안전교육 자료, 사전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

다. 학생중심 교육환경 조성

1) 학교 출입 관리: 학교 안전인력(안전지킴이 및 방역인력)을 활용하여 교문(정문 및 후문) 통제

가. 정문 통제: 안전지킴이실에서 상시 외부인 출입 통제

나. 후문 통제: 등하교시간대에만 개방하고 해당 시간 외에 외부인 출입 통제

다. 후문 개방 시간대 외(조퇴, 지각 등)의 경우에는 정문으로만 진•출입 가능

2) 세이프존(safe zone) 운영

가) 지정 장소: 도서실

나) 이용 대상: 이른 등교(08:40분 이전)학생

다) 운영 방법: 사회 복무요원 활용(및 전교사 순회지도)

라) 운영 기간: 연중(공휴일, 재량휴업일 및 방학 제외)

마) 운영 일수 및 담당교사

담당 기간	운영일수	담당 기간	운영일수	담당교사	비 고
3월	20	8월	9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4월	20	9월	20		
5월	21	10월	19		
6월	20	11월	22		
7월	14	12월	21		

바) 담당자의 역할 할 일: 학생 아침 맞이, 사제 동행 책읽기, 안전지킴이 역할 수행 후 교실 입실(08시 40분) 지도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학교 안전생활 캠페인 실시: 등교시간대 전교임원 및 자원봉사 학생 활용(5월, 11월)

라. 교직원 대상 안전 연수

1) 2022년도 교직원 안전교육(매 3년마다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연수) 이수

: 미이수자 대상 연수 이수 독려를 통해 2023년까지 100% 이수 추진

※ 사이버연수에서 체험중심의 연수가 되도록 추진. 학교안전정보센터 및 학교 안전교육 지원 시스템(supportschoolsafe.kr)의 연수정보 및 개인이력 관리 적극 활용

2) 교직원 및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교직원: 11월 예정, 학생: 11월까지 반별 순회지도 예정)

6. 중점과제 3 안전한 학교풍토 및 시설 조성

과 제	세부 내용	비 고
1 학교 안전문화 확산	-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안전 실천 -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2 안전사고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 안전사고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작성	

가. 학교 안전문화 확산

1)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안전 실천

가) 학생 주도 안전 실천은 '학교 안전주간', '재난 대응 훈련' 등에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

2) 안전 업무 관련 교직원간 역할 명료화

가) 학교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교원과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설정 및 안내

나) 학교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활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

※ 학교안전은 담당 교원만으로는 업무추진이 어려우므로 교원과 직원 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 제고

3) 학교 안전 관련 학부모 연계

가) 학기 초 학교 홈페이지(가정통신문)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여 학교안전 관련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연간 안전관리계획 통지
- 각종 안전 업무 관련 학부모 자원봉사자 모집
- 건강 이상 학생 학교 통보
- 안전사고 보상제도 통지 등

나. 안전사고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1) 상담 및 치료 지원

가)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치유 법령과 지침을 참고하여 실시

2) 학생안전사고 피해회복 지원: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활용

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제도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지원 절차 숙지: 전 교직원

3)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피해복구

가)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 절차: 2022년 학교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처리

[부 록]

1. 학교 위치, 소방차 진입 경로, 비상대피 안내도 및 교외 대피시설
2. 학교안전 자가점검표
3. 학교시설 안전관리 장소별 점검표(9개 장소)
4.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6. 안전점검의 날 학교시설 안전관리 업무 관련 점검표(양식)

[참고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부록 1] 학교 위치, 소방차 진입 경로, 비상대피 안내도 및 교외 대피시설

○ 학교 위치



○ 소방차 진입 경로



* 교무실 2층
행정실 1층

비상차량출입구

⇨ 교문 2개소

○ 비상대피 안내도

2022.3.2. 기준



○ 교외 대피시설

<table>
<tr><td>시설명</td><td colspan="3">대화마을 3단지(동문아파트)</td></tr>
<tr><td>주소</td><td colspan="2">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td><td>규모</td><td>9,805㎡</td></tr>
<tr><td>형태</td><td colspan="2">아파트 지하주차장</td><td>활용가능인원</td><td>11,885명</td></tr>
<tr><td rowspan="2">시설현황</td><td>지정일자</td><td>2011년
09월 07일</td><td>학교와 거리</td><td>70m</td></tr>
<tr><td>관리기관(청)</td><td>일산서구 송포동</td><td>학교대피소요</td><td>적합</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 colspan="2">일산서구청 안전관리과</td><td colspan="2">관리사무소</td></tr>
<tr><td colspan="2">031-8075-7332</td><td colspan="2">031-911-1058</td></tr>
<tr><td>평시활용상황</td><td colspan="4">주차장으로 활용</td></tr>
<tr><td>대피소
위치도</td><td colspan="4">
</td></tr>
</table>

[부록 2] 학교안전 자가점검표(양식)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1.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기본계획, 지역계획, 학교계획	학교계획 수립 시 안전담당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는가?					
		학교계획에서 안전업무와 관련하여 관련 교직원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명확히 기술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의 취지와 목표를 학교실정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였는가?					
		우리 학교는 학교와 주변지역의 위험성을 파악한 후, 이에 적합한 학교안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학교안전계획은 교직원들 간에 명확히 공유되었는가?					
		안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시간, 정보, 인원, 예산 등)과 수행 절차는 파악되었는가?					
2교육활동 운영의 기본지침	학사일정별 학교안전	학사일정별 연간 안전관리계획은 각 계절별 재난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을 계획하였는가?					
		안전학습 관련 컨텐츠는 적절하고 풍부하게 준비하였는가?					
		시기, 활동, 행사별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취약학생 혹은 구역을 파악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는가?					
	외부체험활동 안전	현장체험학습 계획 시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의 사항들을 교사들에게 공지하고, 계획에 게재하였는가?					
	학교주변 안전관리	학교안전의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지자체, 소방서, 경찰서등) 간 협력 계획이 마련되었는가?					
		스쿨존 정비 방법은 마련되었는가?					
	안전약자 안전대책	요양호자(안전약자)를 파악하고, 안전약자 안전대책에 따를 대책을 수립하였는가?					
3. 학교안전교육	예방 및 학교안전교육	안전교육 연간 계획표에서 학교와 학교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교육 계획에 포함시켰는가?					
		안전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도 교육에 포함 시켰는가?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을 준비했는가?					
		안전교육 교사연수 연간계획은 준비 되었는가?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과 연계 방법이 수립되었는가?					
		안전 전문가 초빙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정기훈련	학교구성원 모두 체험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훈련은 구체적 목표 및 평가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훈련은 체험형·토의형으로 수립하였는가?					
		학교에서 일어날 위험이 높은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대비훈련을 계획했는가?					
		심폐소생술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안전약자를 포함한 훈련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구분	영역	세부점검내용	전년도 추진실적			계획수립	
			○	△	×	○	×
4.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	매월 안전점검의 날(제6조)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제7조)실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점검을 계획·실시 하였는가?					
	CCTV 관리	CCTV 관리 업무 분장은 명확한가?					
5 . 학 교 안전문화 확산		안전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기록하고 자료를 기록해서 공유하며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각종 안전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공유·적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자료는 정기적으로 갱신, 정비하여 손쉽게 찾아 쓸 수 있게 준비하였는가?					
		학교 구성원의 안전 관련 행동, 실천, 태도 등에 대해 인정과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학교 풍토가 조성되어 있는가?					
		학교안전은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확보될 수 있다는 가치관 확산을 위한 홍보.협업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전관리활동에 따른 성과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방안을 마련했는가?					
		학교구성원이 학교안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했을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가?					
6. 기타 사항		재난과 학교안전사고의 보고와 보상에 관한 절차와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마련해 놓았는가?					

[부록 3] 학교시설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월 학교안전점검의 날, 양식]

학교시설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　월 학교안전점검의 날]

가. 교실/관리실(교무실, 행정실 등)

날짜 : 2022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대화초등학교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1.1. 바닥				
1.1.1.	교실 바닥의 안전상태(균열 및 마감재 탈락 및 노후화, 보행 장애물 상태여부)			
1.2. 벽				
1.2.1.	벽체 안전상태(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1.2.2.	벽체 부착물 안전상태(칠판, 선풍기 등의 고정 상태여부)			
1.2.3.	콘센트 안전상태(먼지, 탄 자국, 고정 불량, 문어발식 사용 상태여부)			
1.3. 출입문				
1.3.1.	출입문의 안전상태(레일, 손 끼임 방지, 부착물 등 상태여부)			
1.4. 창호				
1.4.1.	창호 안전상태(유리, 보호시설(추락방지용)의 고정 등 상태여부)			
1.4.2.	창호 개폐상태(레일, 창틀의 손상여부)			
1.5. 복도				
1.5.1.	복도의 안전상태(피난관련시설 등 상태여부)			
1.6. 천장				
1.6.1.	천장 마감재 안전상태(처짐, 파손, 누수 흔적 등 상태여부)			
1.6.2.	천장 부착물 안전상태(전등, 선풍기, 냉방설비, 빔프로젝트 고정 상태여부)			
1.7. 기타				
1.7.1.	소화 및 가스설비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및 전문점검결과)			
1.7.2.	책걸상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 점검결과 표시 : ○　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 해당사항없음

나. 실험실

날짜 : 2022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대화초등학교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2.1. 안전계획				
2.1.1.	안전수칙/대응요령 게시상태			
2.2. 안전관리				
2.2.1.	실험장구 구비상태(실험복, 마스크, 보안경 등)			
2.2.2.	실험 중 사고대비 상태(소화기, 콘센트상태, 비상구표시, 대피로 등)			
2.2.3.	시약보관상태(시약보관함 여부, 잠금상태, 필요환기상태 등)			
2.2.4.	특수시약관리상태(독극물, 위험실험시약 보관/잠금상태 등)			
2.2.5.	사후처리상태 (실험실청소, 사용 후 약품관리상태, 약품출납대장기록상태 등)			
2.3. 기타				
2.3.1.	보안관리상태(실험실 잠금장치, CCTV 등)			
2.3.2.	비상시 대비상태(비상대피로 확보상태, 비상연락망 게시상태 등)			

※ 점검결과 표시 : ○ 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 해당사항없음

다. 건축물 점검표

날짜 : 2022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대화초등학교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3.1. 건축 분야				
3.1.1.	구조체 안전 상태(보, 기둥, 슬래브, 벽체의 균열 및 기울임 상태여부)			
3.1.2.	옥상 안전상태(균열 및 탈락, 청소 및 배수 상태여부)			
3.1.3.	화장실 안전상태(파손, 동작 등 상태여부)			
3.1.4.	계단 안전상태(난간 고정, 미끄럼방지 시설 등 상태여부)			
3.1.5.	마감재 안전상태(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3.2. 일반시설물분야				
3.2.1.	일반시설 안전상태(옹벽, 담장, 석축, 절개사면, 교문, 담장 등의 균열, 기울임,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3.2.2.	운동장 및 배수로 안전상태(파손, 패임, 퇴적물 등 상태여부)			
3.2.3.	CCTV 안전상태(파손, 고정, 작동 등 상태여부)			
3.3. 소방분야				
3.3.1.	소화 및 감지설비 안전상태(소화기, 소화전 동작, 고정, 위치 등 상태여부)			
3.3.2.	피난 및 방화설비 안전상태(피난구, 유도표시 및 유도등, 방화문 또는 셔터 등의 동작, 위치, 장애물 등 상태여부)			
3.3.3.	소방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3.3.4.	소방차 진입로 상태여부			
3.4. 전기분야				
3.4.1.	조명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등 상태여부)			
3.4.2.	전열설비 안전상태(동작, 파손, 고정, 문어발식 및 개인전열기 사용 등 상태여부)			
3.4.3.	관리실의 안전상태(전기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상태)			
3.4.4.	전기점검용역업체 점검(지적사항 조치 등) 상태여부			
3.5. 기계 분야				
3.5.1.	냉난방설비 안전상태(냉방 실내·외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등 상태여부)			
3.5.2.	급수 및 급탕설비 안전상태(펌프, 보일러, 세면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누수 등 상태여부)			
3.5.3.	환기설비 안전상태(환풍기 등의 동작, 파손, 부식 등 상태여부)			
3.5.4.	승강기 등 안전상태(승강기, 비상통화장치 등 동작, 파손, 점검 등 상태여부)			
3.5.5.	관리실의 안전상태(기계실, 보일러실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 상태)			
3.5.6.	승강기 및 보일러 정기점검 상태여부			
3.6. 가스분야				
3.6.1	가스설비 안전상태(가스설비 외관부식 파손상태 및 전문점검결과)			
3.6.2.	관리실 안전상태(가스관련시설의 위험 및 접근금지 등 경고표시상태여부)			
3.6.3.	기타 가스설비 정기점검 상태여부			

※ 점검결과 표시 : ○ 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 해당사항없음

라. 어린이놀이 및 체육시설

날짜 : 2022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대화초등학교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4.1. 어린이놀이시설(초등학교)				
4.1.1.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한 안전점검/사고보고서/결과대장 관리여부			
4.1.2.	부적합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 및 수리이력관리대장 작성여부			
4.2. 체육시설(초등학교이외)				
4.2.1.	체육시설의 근본적 낙후/파손상태			
4.2.2.	체육시설의 금이 가거나 깨진부위 존재			
4.2.3.	금속재질 체육시설의 녹 발생, 페인트칠 벗겨짐 여부			
4.2.4.	체육시설 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4.3. 관련부대시설				
4.3.1.	울타리, 의자, 가로등, 표지판, 식수대, 쓰레기처리시설의 고장 또는 파손			
4.3.2.	외부화장실상태 (파손 및 청결상태)			

※ 점검결과 표시 : ○ 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 해당사항없음

마. 통학로

날짜 : 2022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대화초등학교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5.1. 통학로				
5.1.1.	교내차량통행로 및 통학로 안전상태(인도와 차도의 구분, 도로 파손 상태, 보행 장애물 여부)			
5.1.2.	학교 앞 통학로 및 도로의 안전상태(보행 장애물 유무, 도로/보도블록/과속방지턱 파손상태 등)			
5.1.3.	학교 앞 교통시설물 안전상태(교통표지판, 볼록거울, 안전 펜스 등 설치유무 및 파손여부, 표지판 시야확보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여부)			

※ 점검결과 표시 : ○ 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 해당사항없음

바. 화재취약시설(급식실/체육관)

날짜 : 2022년 월 일 점검책임자 : 소속 : 대화초등학교

점검항목		점검결과	위치	특이사항
6.1. 급식실				
6.1.1.	일일 위생안전 점검표 작성상태			
6.1.2.	일일 화재예방 점검표 작성상태			
6.1.3.	일일 청소점검표 작성상태			
6.2. 체육관				
6.2.1.	천정부착물 상태(조명기구, 냉난방 등)			
6.2.2.	별도분전반 상태(설치여부, 관리상태)			
6.3. 공통				
6.4.1.	비상시대비상태(소화기, 완강기, 비상구 표시 등)			
6.4.2.	콘센트 사용상태(문어발식 사용여부, 먼지상태 등)			
6.4.3.	화재감지기 작동 시 수신기 확인가능 여부			

※ 점검결과 표시 : ○ 상태좋음/이상없음, X 결함/이상있음, △ 보통/관리자확인필요, — 해당사항없음

이상으로 ( )월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22. 3. .

최종 작성자: 안전담당자 교 사 (서명)

확인자: 안전책임관 교 감 (서명)

[부록 4] 사안대응 체크리스트

확 인 내 용	조치 시간	확인자	비고
▢ **사고 신고 (일일구, 이구조, 삼보고)**			
▢ **사고현장 보존 및 구호조치 (2차사고 예방)**			
▢ **상황보고** 학교장 보고, 상급기관 보고			
▢ **현장사고 수습본부 가동** - 상황실 운영(전용 전화설치 및 기록자 2인 지정) - 반 구성 및 역할 분배 - 반별 사안처리 및 진행상황 확인			
▢ **언론 대응(본청 대변인실과 협조)**			
▢ **현장대응반장** - 현장대응반 담당자별 세부 역할 지시 - 해당 학년 피해상황 종합 - 후송병원별 담당교사 배치			
▢ **피해학생 보호자 연락**			
▢ **사고관련 정보 수집** - 최초신고자 진술 - 목격자 진술 - 사고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 확보 - 기타 사고관련 자료			
▢ **사안보고서 작성**			
▢ **피해상황 확인 (시간대별)** - 인적 피해 : 사망 명, 부상(중.경상) 명, 실종 명 - 물적 피해 :			
▢ **사안당사자 정보제공 및 반별 학생관리**			
▢ **교내지원반장** - 학생 현황 파악 - 장례(조문) 계획 수립 - 학사일정 조정계획			
▢ **비상연락** 전직원, 학부모			
▢ **관련문서 작성**			
▢ **상담지원** 요상담, 요보호학생 조치			
▢ **행정지원반장** - 현장이동 지원 및 인적.물적 지원 - 학생 귀교 대책 계획			
▢ **유관기관(자문기관) 협조 요청 (법률자문 및 지원)**			

[부록 5]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점검표

출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건축물	**1. 건축물 주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 안전한 보행과 교통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한다.	□	□	◦
	나.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기 위하여 경계 턱이나 가드레일(guardrail) 등을 설치한다.	□	□	◦
	2. 교실바닥			
	가. 교실바닥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환기구, 시스템박스 등을 설치할 경우 주변 바닥과 같은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3. 교실벽			
	가. 칠판을 설치하는 벽면은 칠판이 떨어지거나 엎어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나. 석고보드 등의 건식 벽체, 이동식 벽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칠판 등의 부착물을 붙일 수 있도록 보강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
	다. 교실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라.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상부 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	□	◦
	4. 교실문			
	가. 교실문은 될 수 있는 대로 미닫이 구조로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교실문의 유효 폭은 90㎝ 이상으로 한다.	□	□	◦
	2) 미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	□	◦
	3)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레일 부분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4) 미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5)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한다.	□	□	◦
	나. 교실문을 여닫이 구조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1) 반대편이 보일 수 있도록 일정 높이에 고정된 유리창을 설치하며, 유리는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손 시 파편의 비산(飛散)이 없도록 한다.	□	□	◦
	2) 도어체크(문이 자동으로 천천히 닫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나 경첩 등을 설치하여 문이 닫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한다. 다만, 목재문의 경우에는 재질을 고려하여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3)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한다.	□	□	◦
	4) 여닫이 구조 문의 바닥 문턱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한다.	□	□	◦
	다. 피난로에 있는 모든 문은 열었을 때 피난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5. 교실 창호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호의 틀 두께는 벽체의 두께와 같거나 더 얇게 한다.	□	□	◦
	2)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	□	◦
	3) 유리와 창호 간에 이격(離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
	4) 얇은 유리는 필름 부착 등의 조치로 파손 시 파편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	□	◦
	나. 외부 창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창대의 높이가 실내바닥면에서 1.2m 이하인 경우에는 창호 외부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다만, 해당층이 지표면에 접하는 경우 등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와 추락방지 기능을 갖춘 창호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	◦
	2) 외부 창호가 바닥보다 아래에 설치되거나 커튼월(칸막이 구실만 하고 하중을 지지하지 않는 바깥벽을 말한다)로서 바닥까지 유리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	◦
	6. 특별교실			
	가.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특별교실은 바닥 표면을 내화학성(耐化學性)을 지닌 제품이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난연재료(難燃材料) 이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	□	◦
	나. 특별교실과 준비실 사이에는 교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창을 두어야 하며 위험성이 있는 실험재료나 기구 등은 준비실에 교사가 관리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	□	◦
	7. 복도			
	가. 복도와 교실(특별교실을 포함한다) 등의 바닥은 높이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교실 등의 내부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어야 한다.	□	□	◦
	나. 복도 벽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복도에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한다.	□	□	◦
	2) 복도의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3) 복도에 독립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	□	◦
	8. 계단			
	가.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계단 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왼쪽 회전 계단 형태로 한다.	□	□	◦
	2) 계단을 갈음하여 설치하는 경사로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한다.	□	□	◦
	나. 계단 단 높이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챌판(계단 한 단의 수직면을 말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	□	◦
	2) 철골조의 경우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한다.	□	□	◦
	다. 계단 단 너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1) 초·중등학교의 단 너비는 충분히 확보한다.	□	□	◦
	2)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고르게 한다.	□	□	◦
	라. 계단참의 너비는 최소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마. 계단 난간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높이가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을 설치한다.	□	□	◦
	2) 너비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한다.	□	□	◦
	3) 계단이 끝나는 수평 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설치한다.	□	□	◦
	4) 계단 난간의 높이는 계단으로부터의 높이에 85㎝ 이상이 되도록 한다.	□	□	◦
	5) 계단 난간의 난간살은 난간이 수직재인 경우에는 디딤판 한 단에 2개 이상으로 하고, 수평재인 경우에는 15㎝ 이하로 한다(난간의 흔들림이 5㎜ 이내가 되도록 한다).	□	□	◦
	6) 손잡이는 벽으로부터 5㎝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	□	◦
	9. 화장실: 화장실 바닥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다.	□	□	◦
	나. 배수는 항상 잘 되는 구조로 하여 바닥이 항상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	□	◦
	다. 난방기기는 통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받침대를 만들어 설치한다.	□	□	◦
	10. 그 밖의 사항			
	가. 현관 출입문(유리문)은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문은 파손이 어려운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나. 천창(天窓)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새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유리는 단열 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비산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	◦
전기 시설	**1. 수변전설비(受變電設備)**			
	가. 수변전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구멍이나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	□	◦
	3) 습기나 이슬 맺힘 등에 의한 절연 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	□	□	◦
	나. 수변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반이 주위보다 높고, 배수가 잘 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2) 전기실에 위험 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	◦
	2. 분전반: 분전반(分電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구조가 튼튼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	◦
	나. 분전반은 기판(基板)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한다.	□	□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다. 분전반 상자를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한다.	□	□	◦
	라.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와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	□	◦
	3. 전기배선: 전기배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	◦
	나. 배선에 사용되는 절연 전선·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거죽을 씌운다.	□	□	◦
	다.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자기저항·절연저항·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한다.	□	□	◦
	라.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한다.	□	□	◦
	4. 조명설비: 조명설비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등(燈)기구의 설치는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등 기구 몸체의 교체와 철거가 쉽도록 설치한다.	□	□	◦
	나. 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하여 등의 탈락이나 파손 등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	◦
	다.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라. 조명설비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인다.	□	□	◦
	마. 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한다.	□	□	◦
	5. 전열설비: 콘센트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기둥이나 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 벽의 두께, 교구(敎具) 배치, 칸막이 등을 고려한다.	□	□	◦
	나. 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다. 콘센트 설치의 일반적인 높이는 벽인 경우에는 바닥 위 300㎜, 작업대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대 위 100~300㎜ 정도로 하고, 기계실·전기실·주차장의 경우는 바닥 위 500~1,000㎜ 정도로 한다.	□	□	◦
	라.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한다.	□	□	◦
	마. 전기 용량이 30 ~ 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한다.	□	□	◦
설비 시설	**1. 냉난방설비**			
	가. 교실의 실내 온도 및 습도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
	나. 난방 기구의 표면 온도가 높아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다.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선풍기는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	□	◦
	2. 환기시설			
	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 후드 등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재순환되지 아니하도록	□	□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하여야 한다. 다. 실험실 후드나 국소 배기설비의 덕트는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실험실 배기설비의 덕트 속도는 배기설비 내에서 물질의 퇴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히 빨라야 한다. 마. 후드·후드 배기설비·국소 배기설비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시험하여야 한다.	□ □ □	□ □ □	◦ ◦ ◦
	3. 급배수설비 등 가. 급수시설·설비는 항상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급탕(給湯)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라. 모든 위생 기구는 적당한 수량으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합리적인 간격과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 ◦ ◦
소방시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2. 옥내소화전설비 등 가.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	□ □ □	◦ ◦ ◦
	3. 피난설비 가. 유도등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다.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 유도등은 바로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	□ □ □	◦ ◦ ◦
가스시설	**1. 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한다. 나.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火器) 취급을 금지한다.	□ □	□ □	◦ ◦

분야	안전기준	양호	불량	불량사유
	다. 경계 표지는 출입구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	◦
	라. 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	□	◦
	마. 용기 보관실의 출입문은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	◦
	2. 배관: 가스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한다.	□	□	◦
	나. 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를 한다.	□	□	◦
	다. 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 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한다.	□	□	◦
	3. 가스 기기: 가스 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가. 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	□	◦
	나. 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조치를 한다.	□	□	◦
	다. 자연배기식 반밀폐형 및 밀폐형 연소기의 배기통 끝은 배기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구조이고, 장애물이나 바깥 공기의 흐름에 의해 배기가 방해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	□	◦
	라. 가스 기기가 설치된 공간에는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한다.	□	□	◦
실험 실습 시설	**1.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가. 취급주의를 요하는 실험기구·전기기기·화공약품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취급주의 안전표시를 붙여야 한다.	□	□	◦
	나. 실험실습대와 실험공구는 외관이나 기능이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	□	◦
	다. 인화성 물질(알코올·가스 등)을 사용하는 실험실은 환풍이 잘 되어야 하고, 항상 소화기와 모래주머니를 비치하여야 한다.	□	□	◦
	라.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비상문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	◦
	마. 실험실습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수칙을 학생과 교사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	□	◦
	2. 약품보관설비			
	가. 유해·위험한 물질의 보관설비는 환기기능이 달린 구조로 하는 등 그 물질의 누출 등을 확인하기 쉬운 구조이어야 한다.	□	□	◦
	나. 발화점이 낮은 물질(인·황 등)을 보관하는 설비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	◦
	다. 화공약품 등 실험약품은 반드시 라벨을 붙이고, 실험 후 남은 시약(試藥) 등 폐시약은 지정된 용기에 분리하여 폐기물 전문가에 의해 배출될 때까지 별도 설비에 보관하여야 한다.	□	□	◦

[참고1]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개별 법령의 규정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건축	건축법	◦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공사 설계도서 건축사 작성(제23조) ◦ 건축허가 대상 공사의 건축사 감리 지정여부(동법 시행령 제19조) ◦ 철거예정 7일전 시장군수 구청장 신고(제36조) ◦ 건축물 철거 후 멸실 신고(제36조) ◦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철거의 경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제거 및 결과의 기록 보관 (제36조)
전기	전기사업법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73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정기점검* 실시(제65조) *매월 1회 이상, 용량별로 월 3회 이상
도시가스	도시가스 사업법	◦ 안전관리자 선임(제29조) ◦ 도시가스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제30조) ◦ 점검기관(가스안전공사 등)으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제17조)
승강기	승강기 안전관리법	◦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및 승강기관리교육*(제16조) *승강기안전관리자가 지정 3개월 이내 교육이수 ◦ 월1회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부 보관(제17조) ◦ 연1회 이상 정기검사 및 정기정밀점검*(제13조) *설치 후 15년 이상된 승강기 및 중대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된 승강기 대상
수도시설	수도법	◦ 수도시설에 절수설비 설치(제15조) ◦ 저수조 청소*실시, 위생상태 점검** 기록보관 및 수질검사***(제33조) *반기1회 이상, **월1회 이상, ***연1회 이상 ◦ 수도관리자 교육(제36조) ※ 1년내 8시간의 집합교육 및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교육
하수도시설	하수도법	◦ 정화조 내부청소* 연1회 이상 실시(제33조) *침전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제거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 최단거리 이동편의시설 설치(제3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제17조) ◦ 장애인 접근로 적정 설치(동법 시행령 제4조) - 주출입구에 휠체어 통행용이 및 출입문 시설 - 장애인 복도 통행에 지장 없는 관리 - 장애인용 계단 또는 승강설비 적정 설치 - 장애인용 대.소변기 설치 - 점자블럭,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구비
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리(법 제10조) ※ 시설폐쇄, 훼손여부 및 주위 장애 사항 등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제5조) ◦ 자위소방대 편성.운영(규정 제12조) ◦ 소방안전교육과 훈련 실시(규정 제14조) ※ 연2회 이상 실시 중 1회는 소방서와 합동 훈련 ◦ 자체점검계획 수립 및 자체점검(월1회 이상), 기록보관(규정 제15조) ◦ 소방종합정밀점검(연1회 이상) - 소방서장 보고(법 제19조) ◦ 각실 책임자의 화기단속 및 예방 조치(규정 제9조)
석면	석면안전	◦ 학교시설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 보관(제21조)

구분	관계법령	주요내용
	관리법	◦ 석면조사결과 보고 - 교육감(제22조) ◦ 석면안전관리자 지정 보고 - 교육감(제23조) ◦ 석면안전관리자 안전관리 교육(제24조) ※ 관리자 신고 후 1년이내 6시간 이상
급식시설	학교급식법 시행령	◦ 안전한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구비(제7조) ◦ 급식관리실에 필요한 사무장비 구비(제7조) ◦ 조리종사원 숫자에 맞는 휴게시설 구비(제7조) ◦ 급식시설 설치 시 기준*에 따라 시설설비 구비(시행규칙 제3조) *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시설설비 기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 안전검사기관 정기시설검사(2년 1회 이상) 결과 표시(제12조) ◦ 자체안전점검 월1회 이상 실시(제15조) ◦ 3년간 안전진단실시결과 기록보관(제17조) ◦ 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실시(제20조) ※ 2년 1회 이상, 1회 안전교육 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제21조) ◦ 어린이 놀이시설 사용금지의 경우 관리감독기관에 통보(제16조) ◦ 어린이 놀이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적합(제11조)
외부인 출입	초중등교육법	◦ 외부인 출입, 학교폭력예방 학생안전대책 수립(제30조)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 보건실 66㎡이상 확보 및 세부기준 적합여부(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학생안전교육, 학교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조치(제12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제4조) ◦ 학교 환경위생담당자 지정.관리(규칙 제3조) - 교내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 관리 -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 -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 -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 관리
공사발주	산업안전 보건법	◦ 공사 발주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제30조) ◦ 석면 해체 시 등록업체(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 해체.제거(제38조)
시설사업 촉진	시설사업 촉진법	◦ 학교신설, 학교용지 변경시 교육청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제4조) ◦ 학교용지 내 시설물 증축, 대수선의 경우 교육청 건축승인(제5조) ◦ 시설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교육청 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제18조)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 생활폐기물의 종류, 성질, 상태별 분리보관(제15조) ◦ 사업장 폐기물의 전문업체 위탁 처리 여부(제15조)
하수도	하수도법	◦ 학교 내 하수 및 배수관 신설의 경우 공공하수도 유입(제27조) - 교내 오수 배출 건물 증축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제34조) *정화조 등의 시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제37조) -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준*의 의한 설치(제24조) *하수처리구역안 정화조설치, 하수처리 구역 밖 1일 오수처리량 2㎥이상 오수처리 장치 연결, 그 이하 정화조 설치

[참고2]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학교시설 안전관리

○ 학교안전법 제7조는 교육부장관이 통보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을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표9-58>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학교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학교장은 제1항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점검 후 2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교장의 보고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안전시설에 대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4.>

○ 점검 대상 : 유·초·중·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점검 내용 :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6개 분야 26개 항목

<표9-59>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개관

분야	안전기준 항목
건축물	건축물 주변, 교실바닥, 교실벽, 교실문, 교실 창호, 특별교실, 복도, 계단, 화장실, 그 밖의 사항
전기시설	수변전설비, 분전반, 전기배선, 조명설비, 전열설비
설비시설	냉난방설비, 환기시설, 급배수설비 등
소방시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옥내소화전설비 등, 피난설비
가스시설	저장시설, 배관, 가스 기기
실험실습시설	실험실습 설비 및 비품, 약품보관설비
6개 분야	**26개 항목**

○ 점검 절차 및 방법

-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한 집계표를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에서 제출된 집계표의 소요예산 등 적정성을 검토한 후 시도교육청에 집계표를 취합하여 제출
- 시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제출된 점검결과 보고에 기초하여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시행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점검결과 안전기준 미흡시설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기준에 적합조치토록 노력하며,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에 반영